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 사항으로 규정〉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91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31.
3. 회부연월일 : 2025. 8.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금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안 제10조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 ③ (생략)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u>고려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고려하</u> <u>여 5년마다</u> -----.

현행법은 단가 조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단가가 장기간 고정되었고, 그 결과 실질 가치 하락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음.

특히, 2014년 법 제정 이후 2024년까지 소비자물가는 18.5% 상승, 에너지 소비지출은 27.9% 상승, 전기판매단가는 37.3% 상승¹⁾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컸으나 단가 반영은 제한적이었음.

지속적인 지원금 단가 상향 요구에 따라 지난 2025년 1월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18.5%)을 반영한 단가 상향이 일

1)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 18.5%, 에너지소비지출 27.9%, 전기판매단가상승 37.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시적으로 이루어졌음.

예를 들어, 345kV 송전선로의 지원금 단가는 기존 9,100원/c-m에서 10,784원/c-m으로 약 18.5% 상향되었음.

[송전선로 · 변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변전소 지원금 단가
구분	345kV	500kV	765kV	
기존	9,100(원/c-m)	20,000(원/c-m)	36,000(원/c-m)	119,600(원/MVA)
상향	10,784(원/c-m)	23,700(원/c-m)	42,660(원/c-m)	141,726(원/MVA)

주1) 송주법 제정('14년)이후 고정된 지원금 단가로 인하여 지원금의 실질 가치 감소 및 주민 불만·민원 등이 증가하여 물가상승률 등 반영, 송전선로 및 변전소 지원금 단가 상향('24.12.1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럼에도 지원금 조정에 대한 재검토 기준 부재는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어 금번 상향 이후에도 지원금 조정에 대한 요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금 결정기준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단가 산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특히,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원천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비협조 등으로 전력망 확충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원기준의 탄력적 반영을 제도화하는 것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 완화와 인허가 지연 최소화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5년 단위 검토 규정을 두고 있음.

[유사 입법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자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 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관리의 기본방침 2. 댐 시설의 관리계획 3. 댐 저수운영 및 물환경 보전계획
4. 댐 주변지역 보전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최초 적용 시점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지원단가 상향이 2025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이루어진 만큼 첫 재검토 시점은 2030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

2) 기후부도 같은 취지에서 부칙에 ‘2030년부터 적용’을 명시할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37